

조직 및 정원규정

제	정	2004. 10. 27	개	정	2019. 08. 16
개	정	2005. 01. 21	개	정	2019. 12. 19
개	정	2005. 06. 27	개	정	2020. 04. 01
개	정	2005. 08. 30	개	정	2022. 03. 02
개	정	2005. 11. 22	개	정	2023. 10. 11
개	정	2006. 03. 28	개	정	2025. 04. 18
개	정	2006. 11. 27	개	정	2025. 05. 30
개	정	2006. 12. 22			
개	정	2007. 10. 23			
개	정	2007. 12. 07			
개	정	2008. 04. 23			
개	정	2008. 12. 23			
개	정	2010. 01. 06			
개	정	2010. 03. 29			
개	정	2010. 11. 08			
개	정	2011. 04. 26			
개	정	2011. 09. 19			
개	정	2012. 02. 21			
개	정	2013. 06. 28			
개	정	2014. 07. 11			
개	정	2017. 11. 17			
개	정	2019. 02. 19			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조직의 개편)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 및 조직의 개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2 장 구성원

제4조(구성원) 재단에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.



제5조(이사장)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0.1.6.>

제6조(감사)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, 시 문화재단 담당 과장을 당연직 비상근 감사로 한다. <개정 2019.12.19.>

제7조(대표이사) ① 재단에 1인의 대표이사를 두며,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. <개정 2010.1.6.>

② 대표이사는 정책협력실, 감사실을 두고, 경영본부 소속의 기획조정부·경영지원부·안전시설부·홍보기획부, 예술본부 소속의 공연기획부·전시기획부·축제기획부·아트리움운영부·무대예술부, 문화본부 소속의 생활문화기획부·예술창작지원부·문화예술교육부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5.1.21., 2005.6.27., 2006.11.27., 2006.12.22., 2007.10.23., 2008.4.23., 2008.12.23., 2010.1.6., 2010.11.8., 2011.4.26., 2012.2.21., 2014.7.11., 2017.11.17., 2019.8.16., 2022.3.2., 2023.10.11., 2025.4.18., 2025.5.30.>

제8조(비상근이사)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 이사로 하고, 시 인사·조직 담당국장, 시 문화재단 담당국장 2인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. <개정 2007.12.7., 2010.1.6., 2010.3.29., 2022.3.2.>

제9조(직무대행)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재단의 조직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필요 시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6.>

제10조(직원)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, 기술관리직, 계약직, 공무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3.10.11.>

② 일반직과 기술관리직의 직급은 2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29.]

③ 계약직, 공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10.11.>

제11조(자문위원 등) 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3 장 조직 및 정원

제12조(기구 및 정원) ① 대표이사 밑에 정책협력실 및 감사실, 경영본부, 예술본부, 문화본부를 두고 경영본부에 기획조정부·경영지원부·안전시설부·홍보기획부, 예술본부에 공연기획부·전시기획부·축제기획부·아트리움운영부·무대예술부, 문화본부에 생활문화기획부·예술창작지원부·문화예술교육부를 둔다. <개정 2005.1.21., 2005.6.27., 2006.11.27., 2006.12.22., 2007.10.23., 2008.4.23., 2008.12.23., 2010.1.6., 2010.11.8., 2011.4.26., 2012.2.21., 2014.7.11., 2017.11.17., 2019.2.19., 2022.3.2., 2023.10.11., 2025.4.18., 2025.5.30.>



② 재단의 기구 및 정원표는 “별표 1”과 같다. 다만, 부서별 정원표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6.12.22.>

제12조의1(임시기구) 대표이사는 위탁(특수)사업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직 내에 적정규모의 전담반 또는 직제 외의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서에 준하되 직급별 직위는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4.1.>

제13조(직위 및 복수직급제) ① 정책협력실장 및 본부장은 2급, 3급으로 보한다. <개 정 2005.1.21., 2005.6.27., 2006.3.28., 2007.12.7., 2008.4.23., 2008.12.23., 2010.3.29., 2010.11.8., 2012.2.21., 2013.6.28., 2017. 11.17., 2019.2.19., 2022.3.2., 2025.4.18.>

② 감사실장 및 부장은 3급, 4급, 5급으로 보한다. <신설 2013.6.28.> <개정 2022.3.2., 2023.10.11., 2025.4.18.>

③ 부서원은 4급, 5급, 6급, 7급으로 한다. <신설 2013.6.28.>

제14조(업무분장)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5.1.21., 2005.6.27., 2005.11.22.>

제 4 장 보칙

제15조(위원회) ①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 등 경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16조(위임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06.12.22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08.12.23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0.11.8.>

제2조(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예술 감독의 소관사무 중 축제에 관한 사무는 문화사업 부장이, 공연기획업무지원 및 대관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무는 예술국장이, 문화예술본부장의 소관사무중 문화기획부를 관장하는 사무는 문화진흥국장이, 감사역의 사무는 경영기획부장이 이를 각각 승계한다.

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「인사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영지원본부장”을 “경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회계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경영지원본부장”을 “경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민원사무처리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 중 “검사역으로”를 “감사부서로”로 한다.

④ 「위임전결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예술감독·본부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대관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문화예술본부장”을 “예술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감사규정시행세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검사역”을 “감사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검사역실 직원”을 “감사부서의 직원”으로, “감사반장은 검사역”을 “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예산성과급 시행세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경영지원본부장”을 “경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업무분장에 관한 시행세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예술감독, 홍보마케팅실, 검사역과 경영지원본부, 문화예술본부의”를 “홍보미디어실과 경영국, 예술국, 문화진흥국의”로 한다.

⑨ 「제안세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, 제9조의2중 “경영지원본부장”을 “경영국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차량관리세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, 제6조, 제19조 중 “경영지원본부장”을 “경영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1.4.26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「이사회운영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“본부”를 “국”으로 한다.

② 「연봉제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3] 중 “본부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사무관리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중 “문화연구부”를 “문화기획부”로 한다.

④ 「민원사무처리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지 제6호 서식] 중 “본부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

- ⑤ 「물품관리규정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[별지 제4호 서식], [별지 제6호 서식], [별지 제10호 서식], [별지 제14호 서식],
 [별지 제16호 서식], [별지 제17호 서식] 중 “본부장”을 각각 “국장”으로 한다.
- ⑥ 「정원에 관한 시행세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[별표 1] 중 “문화연구부”를 “문화기획부”로 한다.
- ⑦ 「업무분장에 관한 시행세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[별표 1] 중 “문화연구부”를 “문화기획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2.2.21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4.7.11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7.11.17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「연봉제규정」 제24조 관련 [별표 8] 중 “국장.단장 제외”를
 “국장 제외”로 개정한다.

② 「여비규정」 제9조 관련 [별표 2]중 “국장.단장”을 “국장”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에 의거 부서명은 일괄 개정한다.

부 칙

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에 의거 부서명은 일괄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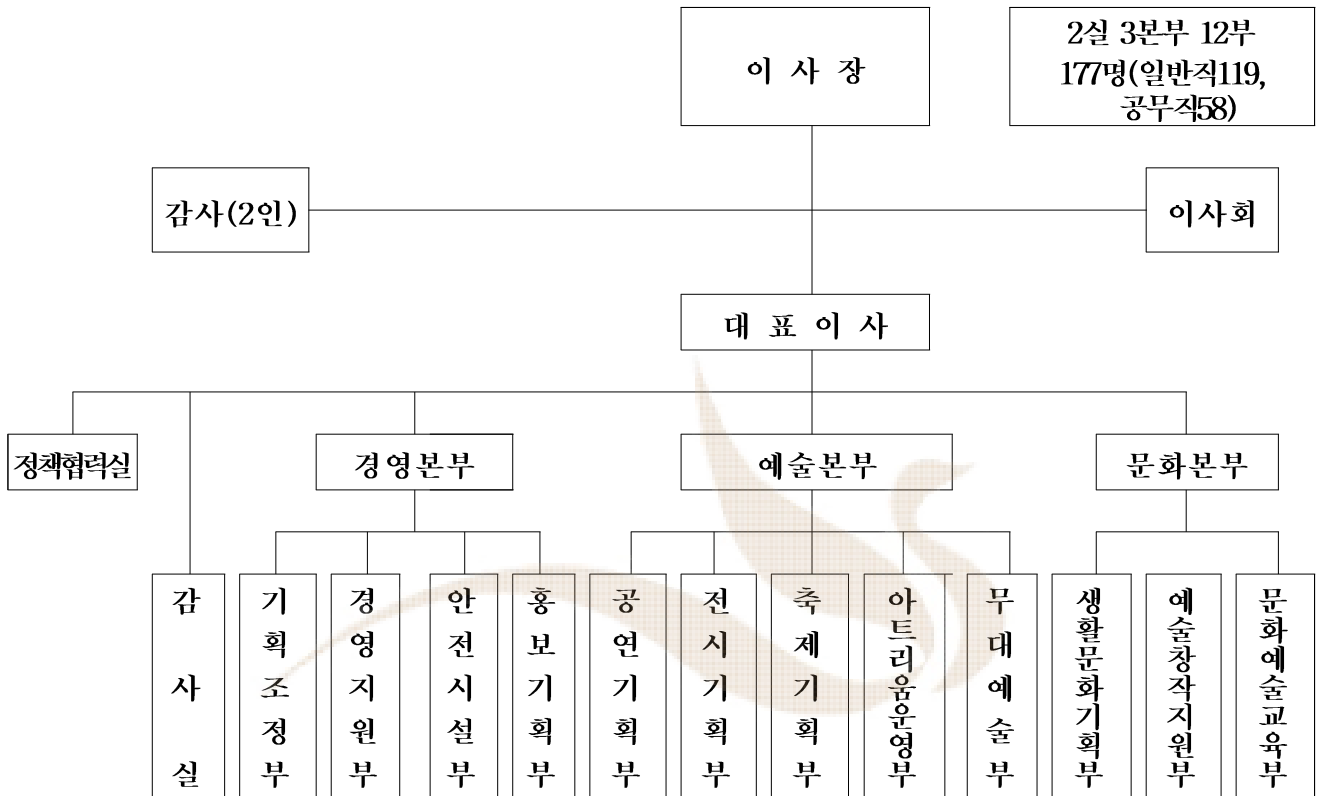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<개정 2005.1.21., 2005.6.27., 2005.8.30., 2006.11.27., 2006.12.22., 2007.10.23., 2008.4.23., 2008.12.23., 2010.1.6., 2010.11.8., 2011.4.26., 2012.2.21., 2014.7.11., 2017.11.17., 2019.2.19., 2022.3.2., 2023.10.11., 2025.4.18., 2025.5.30.>

조직 및 정원표



[별표 2]

삭제 <2005.11.22.>

